

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4. 11

제 출 자 : 구미시장

1. 개 정 이 유

우리시에서 제정 적용하고 있는 “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” 조문중 절차상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건설기계의 대여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

2. 주 요 골 자

- 가. 건설기계의 운전을 해당 건설기계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완화하고
- 나. 건설기계 운전일지에 작업현황을 기록하여 주무과장에게 제출토록 규정

3. 참 고 사 항

- 가. 2003년도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 지적사항
※기획담당관실-4110(2004. 8. 25)에 의함
- 나. 관련법령 : 구미시건설기계대여 및 관리조례

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7조제1항 중 “시장이 지정한 자에 한하여 운전한다”를 “해당 건설기계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한한다“로 하고, 동조 제2항 중 “비치 작업현황을 기록하여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는다”를 “기록하여 주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【제7조】 (생략) ①건설기계의 운전은 <u>시장이 지정한</u> <u>자에 한하여 운전한다</u> ②운전자는 운전일지를 <u>비치</u> 작업 <u>현황을 기록하여 주무과장의 결재를</u> <u>받는다</u>	【제7조】 (현행과 같음) ①-----<u>해당 건설기계 면허</u> <u>증을 취득한 자로 한한다</u> ②-----<u>기록하여 주무과장</u> <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</u>